
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수산자원의 보호·육성을 목적규정에 명시함(안 제1조).
- 불법어업 등의 예방·관리를 위한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시·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연근해어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와 고장·분실 시 위치통지 의무를 부과함(안 제8조).
- 어획실적 및 전제실적의 보고의무와 전제계획서 제출의무를 규정함(안 제9조).
- 양륙장소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정장소 외 양륙을 제한하며, 양륙 실적 보고 및 위판 시 보고의제 규정을 마련함(안 제10조·제11조 및 제13조).
- 어획확인서 발급 및 유통 시 전달 의무를 규정하고,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·제출 제도를 마련함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).
- 어획·전제·양륙 정보 및 증명서 발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

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).

○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명예감시원 위촉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).

○ 주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(안 제24조).

II. 검토의견

○ 제정안은 제22조¹⁾에서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동 규정은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[윤준병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2216725)]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안건²⁾의 심사 시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1) **안 제22조(출입·검사 등)**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에 필요한 지도·단속, 불법 양륙 및 어획확인서의 불법 유통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륙장소·사업장·창고,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③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.

2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(2216725)이 2026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임.

-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시·도 단위의 불법 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,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